

군산시 공고 제2017 - 298호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변경 및 필요조항(제10조의2) 신설

2. 주요내용

- 제2조제4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 제10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조항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 조 : 농산물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3월 1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붙임1 참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65/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전화 454-5973, 팩스 454-3009)

- 전자우편 : bluehsp@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계(전화 454-5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2. 군산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5.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대표
6.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7. 생산자 단체 대표
8.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중·고등학교 교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관리 인증품 농산물</p> <p>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p> <p>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 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p> <p>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p> <p>마. (생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p> <p>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p> <p>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p> <p>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 -----</p> <p>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p> <p>마.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p> <p>① 시장은 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p>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2. 군산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5.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대표
6.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7. 생산자 단체 대표
8.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중·고등학교 교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 - 344호

공 고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가 확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 수정(조례안 제9조제4항제1호)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 신설(조례안 제9조제4항제3호~제7호까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가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조례명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 가족청소년과)
 전화 063-454-3252, 팩스 063-452-9477
 전자우편 sshai337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063-454-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제9조제4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④ ----- ----- -----.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 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 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 설>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17-3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금강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5-117(2015.09.11.)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62-2번지 일원(금강공원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금강공원)사업
 - 명 칭 :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금강공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9,660㎡(건축면적 2,705.82㎡, 건축연면적 4,679.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5. 09. 11. ~ 2017. 02. 28.
 - (변경) 2015. 09. 11. ~ 2018. 12. 31.
6. 공사설계도서 : 게재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면	동,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총 계			10필지		14,144	9,660					
1	군산	내흥	282	답	2,317	1,628	군산시				
2	군산	내흥	286	답	2,280	1,968	군산시				
3	군산	내흥	287-3	답	976	687	군산시				
4	성산	성덕	461-7	답	2,251	714	군산시				
5	성산	성덕	461-11	답	1,851	217	군산시				
6	성산	성덕	461-8	답	1,899	1,899	군산시				
7	성산	성덕	462-1	구거	26	26	군산시				
8	성산	성덕	461-10	답	17	17	군산시				
9	성산	성덕	461-9	답	144	144	군산시				
10	성산	성덕	462-2	답	2,383	2,360	군산시				

군산시 고시 제2017 - 36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룡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군 산 시 장

□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칭	군산시장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향	군산대학교 앞 원룸촌 일대가 합류식으로 운용되어 있고 생활하수 등이 미제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으로, 우.오수를 분리화 함으로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단계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미제천의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	전북 군산시 미룡동일원		
	면적 (㎡)	0.222km ²	영구점용	395㎡
			일시점용	2,962㎡
계	3,357㎡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종류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명칭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군산처리구역(미룡분구) 1. 미룡동(미제마을)일원			
사업시행기간	2017. . ~ 2018. . (15개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첨부 참조			

※ 관계 설계도서 공람장소 : 군산시 수도사업소(하수과), 공사현장사무실(착공후)

군산시 공고 제2017-23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신흥동 3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나. 명 칭 : 신흥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1동/1층 (건축면적 65.8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문화예술과)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기간 : 2016. 9. 23. ~ 2017. 1. 23.

군산시 공고 제2017 - 334호

군산시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군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대상사업 분야(3개년 이상 추진가능한 사업)
 - 군산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 실시
 -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의 추진 지원
 - 기타 남녀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사업은 평가에 의한 일몰제 적용
- 지원제외 사업
 - 단체설립 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단체
 - 회원 상호간 친목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
 - 사업계획의 부실 또는 사업효과 극소인 사업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도·시비 지원 사업
 - 인건비 성격의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 단체,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업 추진 기간

- 2017년 4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4.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7. 3. 2 - 3. 13(12일간) 18:00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소인 유효), E-mail접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3개년),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정), 단체현황 및 2016년 활동실적, 임원 및 회원 명단, 고유번호증(세무서 비영리단체증명) 각 1부
 - ※ 방문 및 우편접수시 관련서류 e-mail 송부 : answlsdk11@korea.kr
 - ※ E-mail 접수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신청건수 :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접수처 :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454-3214)

5. 심사 및 통보

- 심사일정 : 2017년 3월중
- 심사방법 : 군산시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원액 결정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6.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 종료후 10일내 정산서 제출
- 정산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확인)

【 별지 3 】

사업계획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 장에 요약 (심의위원 제공자료)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등록기관 및등록일			2016 총예산 (단위 : 천원)	
	시군지회수			상근직원수(명)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목적				
	사 업 비 (천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사업대상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사업비 산 출 내 역					
2016 공익활동 추진실적					
2016 보 조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효과				

【 별지 4 】

사 업 계 획 서

(심의위원 제공자료)

1. 사 업 명 (제목)

○

2. 목 적

○

○

3. 사업내용

○ 추진기간·일시

○ 장 소

○ 참여대상 및 인원

4. 추진방법

○

○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

○

6. 기대효과

-
-

7. 사업비 구성

- 1) 총 사업비 : 천원(100%)
- 2) 보조금신청액 : 천원(%)
- 3) 자 부 담 : 천원(%)
- 4)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 인건비(단체의 직원으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자는 제외), 통역비 등
홍보비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등 홍보용품 제작등
교통비				-시내·외 교통비, 버스임차료 등
사업진행비				-다과비, 이체수수료등 (보조금 총액의 5%이내)

※ 사업비 내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차후 3개년 추진계획

- 심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 계획, 사업비 구성 등 자유롭게 작성

【 별지 5 】

단 체 현 황

단 체 명	한글 (영문)					
대표자명	한글 (한자)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무실소재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E-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연월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사단법인(), 등록단체()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명(예: 사무처장 ○명, 총무 ○명, 간사 ○명)					
설립목적						
조직(임원) ※현 회 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자택 또는 HP)	임기
	회 장					
	부회장					
	총 무					
	간 사					
재정상태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2015					
	2016					
단체현황	총회원수 : 명					
2017년 사업 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별지 6 】

2016년 공익사업 추진실적

※ 2016년에 추진한 사업 중 공익활동 실적만을 기재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사업비 재원(천원)					
					계	국비 (보조처)	도비 (보조처)	시비 (보조처)	자부담	기타 (보조처)

군산시 공고 제2017 - 370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7. 3. 2.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7. 3. 2.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공 인 신 조	군산시 복지관광국 어린이행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어린이 행복과
	군산시 복지관광국 주민생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주민생활 지원과
	군산시 복지관광국 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복지 지원과
	군산시 복지관광국 식품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식품 위생과
	군산시 복지관광국 문화예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흑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문화 예술과

군산시 복지관광국 관광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관광 진흥과
군산시 복지관광국 체육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체육 진흥과
군산시 조촌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NBR	공인마멸에 따른 인증기 교체	조촌동
군산시 미성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황동	공인마멸에 따른 인증기 교체	미성동
군산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도시 재생과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박물관 관리과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9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공 인 폐	군산시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어린이 행복과
	군산시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주민생활 지원과

기	군산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복지 지원과
	군산시 주민복지국 식품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식품 위생과
	군산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문화 예술과
	군산시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관광 진흥과
	군산시 주민복지국 체육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체육 진흥과
	군산시 조촌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신주	공인마멸에 따른 인증기 교체	조촌동
	군산시 미성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NBR	공인마멸에 따른 인증기 교체	미성동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17 - 3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접수 안내

사업개요

- 사 업 비 : 후계자별 농업창업자금 2억 지원(1%,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비용 및 운영자금 지원 등
- 신청기간 : 2017. 2. 15. ~ 2017. 3. 22.
- 신청대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2012년 후계농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필수)우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3. (필수)사전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금융상담 후 발급)
4. (필수)경영규모(소득현황) 확인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출매입 관리대장, 거래내역서 등 영농규모·소득원 증빙 자료
5. (해당)교육 이수증(최근 3년),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최근 3년)
6. (해당)양성평등 교육 실적증명·부부공동경영협약서(최근 3년)
7. (해당)자조금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실적(사업신청일 현재)
8. (해당)재해보험가입증명(사업신청일 현재)
9. (해당)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최근 5년)
10. (해당)표장/상장(시장급 이상)
11. (해당)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최근 5년)
12. (해당)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최근 5년)
13. (해당)연간 영농계획서(최근 5년)
 - 연간일정표, 판매계획 등이 포함
 -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14. (해당)영농일지 및 경영장부(최근 5년)

-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주소) 및 ID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15. (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16. (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최근 3년 : 2014년부터, 최근 5년 : 2012년부터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17 - 4호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 예방, 치료 등 복지향상 도모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2017년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17년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2차)』은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자(단, 결혼한 만20세 이상~만24세 미만도 가능)에 한해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 들어있는 카드를 지원합니다.

생생카드 사용처는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스포츠용품,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레포츠 클럽, 경기장, 사진관, 화원, 펜션·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미용재료,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 등이 있습니다.

1. 신청기한 : '17. 2. 27. ~ 2017. 3. 31(금)
 2.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5세 이상 ~ 만 65세 미만(1952. 01. 01. ~ 1992. 12. 31.)
 - ※ 단, 결혼한 만20세 이상 ~ 만 24세는 가능
(1993. 1. 1. ~ 1997. 12. 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 농가
- * 제외대상
- 2016.01.01. 이후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등록한 농어가(비등록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어업인

3.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 신분증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